

病院税務相談

国民의 福祉向上과 더불어 점차 增大되는 医療需要는 医療保險制度의 拡大実施와 함께 国民에 대한 医療施惠를 점차 充足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急増하는 医療需要와 함께 医療에 대한 選好度에 비해 医療機關의 發展은 現實情을勘索한 医療制度上의 各種問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実情에 처해 있다.

本会는 이에 특히 病院諸稅面에 閑心을 갖고 病院税制欄을 마련하여 病院運營 發展에 一助가 되고자 하오니 회원병원의 많은 參与를 바라는 바랍니다.

[問] 8~9月号에 게재된 個人病院의 医療法人 転換時 税制上 留意할 点중 讓渡所得稅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土地·建物등의 法人出捐에 따른 讓渡所得稅 課稅与否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D病院)

[答] (1) 讓渡所得稅는 근본적으로 有償讓渡하는 경우에 取得稅額과 讓渡稅額의 差額에 대하여 과세하는 所得稅입니다. 所得稅法 제5조는 非課稅所得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6호의 讓渡所得稅 非課稅 항목에는 医療法人 出捐에 따른 非課稅條項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租稅減免規制法 제45조(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免除)에서도 個人病院의 法人轉換에 따른 문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讓渡所得稅는 有償讓渡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医療法人에의 出捐은 有償이 아닌 無償讓渡이기 때문에 所得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相統稅法 제29조의 2 (贈与稅納稅義務者)에 의하면 医療法人에의 出捐은 일단 贈与稅의 課稅對象이 되게 됩니다.

한편 同法 제34조의 5 (準用規定)을 보면 제

相談 : 鄭 基 善 (서울대학교病院 附設病院 研究所 諮問研究委員)·公認會計士
柳 泰 鉉 (公認會計士·正宇會計法人)

8조의 2를 準用하도록 되어있으며, 제8조의 2 (相統稅課稅額 不算入)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同施行令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贈与稅도 비과세됩니다.

다시 말하면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法人의 경우는 贈与稅가 기본적으로 非課稅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다만 医療法에 의한 医療法人에 医療인이 出捐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法人の理事로 되어 있으면 非課稅되나 医療인이 아닌 사람이 出捐하고理事로 있는 경우에는理事인 사람이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는 贈与稅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非医療인이 출연만 하고理事는 되지 않거나 出捐하지 않은 사람이理事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4) 1984年 4月号 稅務相談時 基本財產으로 출연된 土地売却에 대하여는 特別附加稅 課稅對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筆者が 다시 조사한 바로는 本件 相談과 같은 理論的 根據, 即 基本財產으로 출연된 분은 政府에 기부한 것이고 政府의 事前承認을 받아서 基本財產을 처분하며, 处分에 따라 収入된 代價가 法人外로 流出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事業目的遂行이나 病院移転에 따른 代替土地등의 買入에 사용된다는 根據에 따라 特別附加稅는 과세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稅務官署에서는 特別附加税는 과세하지 않으나 特別附加税에 대한 防衛税는 부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某 病院이 현재 위와 같이 課稅保留狀態에 있음).

〔問〕 外部人을 강사로 초빙하여 원고료 와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단법인 B協会)

〔答〕 (1) 講師料와 原稿料는 所得税法 제25조(其他所得) 제1항, 제13, 14호 및 同施行令 제49조의 2 제1항 4호에 의거 其他所得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支給額에 대한 源泉徵収는 所得税法 제144조(원천징수세율) 제6호에 의거 25%가 됩니다. 그러나 支給額 전체에 25%를 끄하는 것이 아니라 同施行令 제73조의 2(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에 의거 50%를 必要經費로 무조건 차감하고 남은 50%에 25%를 끄하게 되며 이렇게 하여 산출된 所得税에 다시 방위세 10% 와 주민세 7.5%를 끄하여 그 합계额을 차감하게 됩니다.

(2) 예로서 100,000원의 강사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	100,000원
필요경비	△50,000
과세표준	50,000원
소득세 (25%)	△12,500
방위세 (소득세 × 10%)	△ 1,250
주민세 (소득세 × 7.5%)	△ 938
純支給額	<u>85,312원</u>

(3) 강사료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所得税法 제162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交付)에 의거 源泉徵収領收証을 지급받는 자에게 交付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支給月의 다음 月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 부분과 所得税徵収額 集計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源泉徵収領收証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所得

稅法 제 193조(支給調書의 提出) 제 5항에 의거 支給調書의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담당 鄭 基 善

【問】 医療機關等이 提供하고 있는 医療保健用役이 附加価値税法上 免稅되는 경우와 留意하여야 할 内容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경기도 수원시 J병원)

【答】 (1) 附加価値税 免稅制度의 意義

가. 附加価値税法 제1조는 附加価値가 있는 모든 財貨 및 用役은 모두 課稅對象으로 하는 「課稅原則」을 규정하고 있으나 租稅制度의 手段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국가정책목표를 具現하고자 特定한 財貨用役에 对하여는 附加価値税를 免稅하고 있습니다.

나. 上記한 免稅制度는 供給者側面보다는 受惠者(소비자)側面을 保護하고, 国民의 衛生生活等을 保護하려는 趣旨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完全免稅制度인 零稅率制度(例: 수출등 외화획득 사업인 경우 매출세액은 영세율인 동시에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제도)와는 달리 病院經營에 관련된 모든 買入 稅額이 控除(還給)되지 아니하므로 동부담 세액이 医療酬價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受惠者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 実情입니다.

(2) 附加価値税法 第12條(免稅) 第1項 第4号의 医療保健用役;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것(医療法 또는 獸醫師法에 依하여 医療機關 또는 動物病院을 開設한 者가 提供하는 것을 包含)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医療法에 規定하는 医師, 齒科醫師, 漢醫師, 助產員 또는 看護員이 提供하는 用役.

2) 医療法에 規定하는 接骨師, 鍼師 또는 按摩師가 提供하는 用役.

3) 医療技士法에 規定하는 臨床病理士, 放射線士,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齒科技工士 또는 齒科衛生士가 提供하는 用役

4) 藥事法에 規定하는 藥師가 提供하는 医藥品의 調劑用役